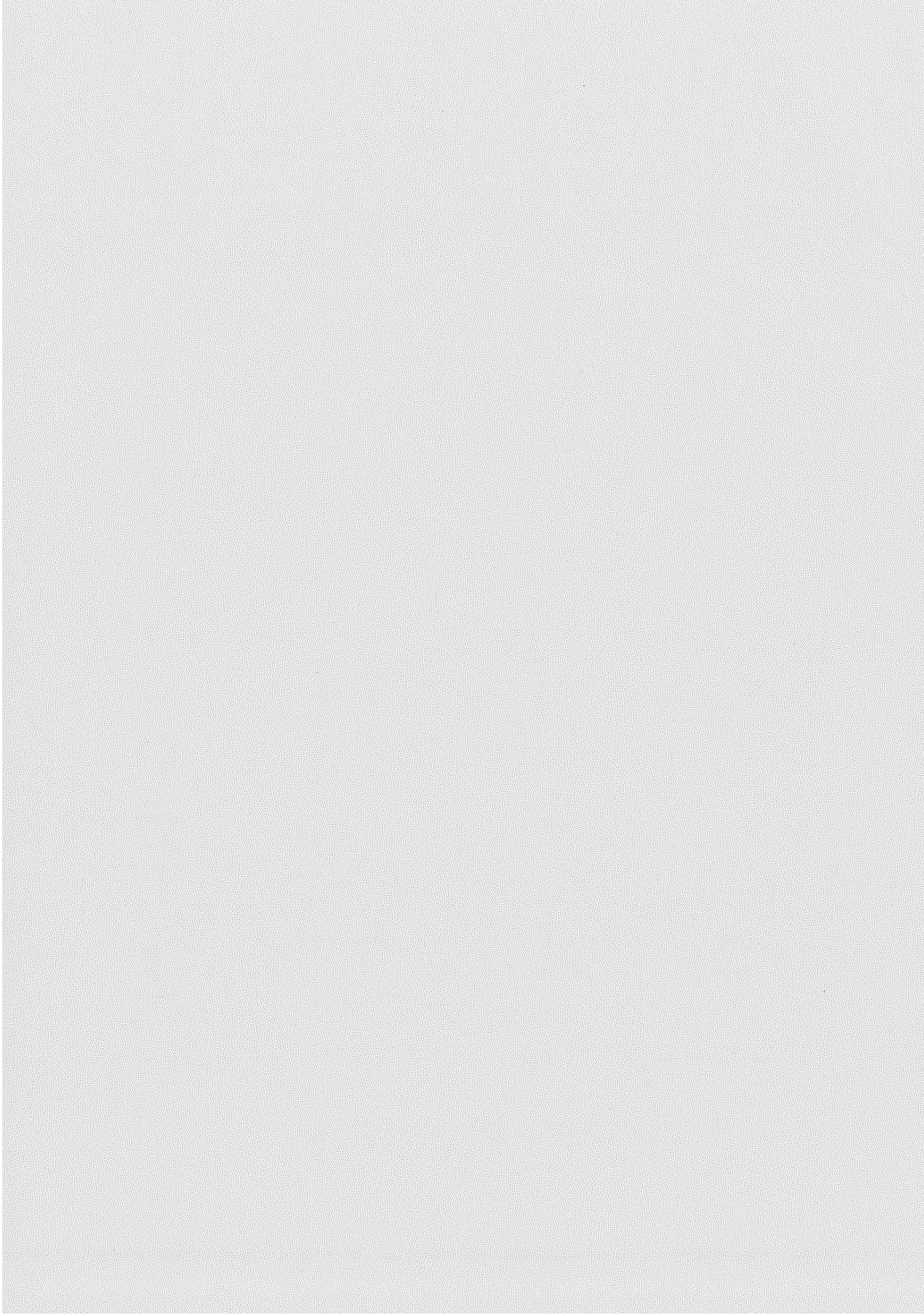


第13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1.7.18.~7.2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3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7월 18일 (수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30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0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3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최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7월 18일 (수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3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3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기수 위원 외 4인 발의)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이번 회기중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

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7월 12일 및 7월 13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청 간부 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부교육감 유선규

지난 7월 12일자 일반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간부직원 단상앞으로 나눔)

그리고 7월 13일날 교육전문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제130회-제1차 본회의]

그 중에서 이동된 본청 간부직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보은교육청 김남훈 장학관님께서 본청 초
등교육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본청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과장님께서
학교운영지원과장님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본청 총무과 백남길 지방행정사무관이 승
진을 해서 지방서기관으로 본청 공보감사담
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간부직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과보고

(11시 04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7월 10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이
기수 외 4인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
가 있어, 같은 날 공고 제2001-7호로 제130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
하였으며, 동일자로 교육위원 이기수 외 4
인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처리하신, 2001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은 6월 21일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총액의 변동이 없이
세출예산중 7억 3,776만원이 삭감되어 예비
비로 조정된 세입·세출 각각 8,845억
6,666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 제12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7월 14일 제190
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충청북도교육자치
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자구 일부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발의된 충청북
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처리하시
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3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
기결정의건

(11시 07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충청북도 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3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 7월 19일은 교육기관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 09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이기수 위원님께서

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 명시된 동법률의 근거조항이 변동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정기회의 집회일을 매년 10월 20일에서 10월 16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당초예산안 심의기간 사이에 예산안 검토기간을 확보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 등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 이 규칙의 근거법령 조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조를 제10조로, 안 제36조에서 소위원회 설치의 근거법령 조항 같은법률 제18조를 제13조로, 안 제57조에서 징계·자격심사의 근거법령 조항 같은법률 제24조를 제19조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4조제2항 중에서 정기회의 집회일을 매년 10월 20일에서 10월 16일로 조정하고, 셋째, 안 제46조제3항 중에서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안 제2항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제24조를 제19조로 조정하려는

[제130회-제1차 본회의]

것입니다.

기타 개정근거, 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체서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11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를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

원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충원 위원님과 조일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는 이어서 소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소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교육위원협의회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제13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 출석공무원 : 11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별첨 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7월 20일 (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기수 위원 외 4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칙안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집행청 간부님들이 많이 출석을 못하셨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청와대 초청으로 교육감 회의 대리참석 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고, 초등교육과장, 과학실업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

(11시 01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송진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송진하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0회-제2차 본회의]

(조일환 위원 본회의장 나감)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 안건은 그간 몇차례에 걸쳐 교육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에 따라 7월 10일 이기수 교육위원 외 4인의 교육위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7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1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이 규칙에 명시된 동법률의 근거법령 조항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조를 제10조로, 소위원회 설치의 근거법령 조항인 같은법률 제18조를 제13조로, 징계·자격심사 청구의 근거법령 조항인 같은법률 제24조를 제19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정기회의 집회일을 매년 10월 20일에서 10월 16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당초 예산안 심의기간 사이에 예산안 검토기간을 확보하였고,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부칙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의 근거법령 조항인 제24조를 제19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작년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던 대로 정기회를 분리해서 전반기에 행정감사를, 후반기에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개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의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별첨 3)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송진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3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1시 08분 폐회)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9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별첨 3)

제13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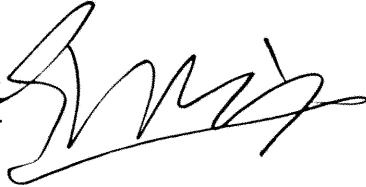
의 장 손 만 재



위 원 이 충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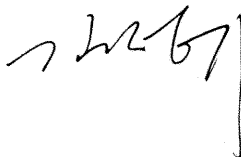


위 원 조 일 환



의사국장

김 성 기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30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1. 7. 18. ~ 7. 20.(3 日間)

| 日 時 | 附 議 案 件 | 備 考 |
|----------------------|--|--------|
| 7月 18日(水) (11:00) | <input type="checkbox"/> 開 會 式 [第1次 本會議] 1. 제13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1. 7. 18. ~ 7. 20.(3 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설명)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조례심사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教育委員 協議會 | |
| 7月 19日(木) | <input type="checkbox"/> 教育機關 訪問 •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충청북도서해수련원 설립예정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대천임해수련분원 (충남 보령시 소재) | 本會議 休會 |
| 7月 20日(金) (11:00) | [第2次 本會議]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input type="checkbox"/> 閉 會 | |

(별첨 2)

| | |
|--------------|------------------------|
| 의안번호 | 제 130 - 1 호 |
| 의 결 년 월 일 | 2001. . . (제 130 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 |
|-------|--------------|
| 발 의 자 | 이기수 교육위원회 4인 |
| 발의년월일 | 2001. 7. 10.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 |
|----------|---------|
| 의안 번호 | 제130-1호 |
|----------|---------|

발의년월일 : 2001. 7. 10.

발 의 자 : 이기수 교육위원외 4인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이 규칙에 명시된 동법률의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정기회의 집회일을 매년 10월 20일에서 10월 16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이 규칙의 근거법령 조항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로 하고, 소위원회 설치의 근거법령 조항을 같은법률 제13조로 하며, 징계·자격심사 청구의 근거법령 조항을 같은법률 제19조로 함(안 제1조, 제3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 정기회의 집회일을 매년 10월 20일에서 10월 16일로 조정함(안 제4조제2항).
-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부조문을 정비함(안 제46조제3항).
- 부칙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중 일부를 개정함(부칙 안 제2항).

3.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3조 및 제19조

4. 규칙안 : 덧붙임

5.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5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로 한다.

제4조제2항중 “10월 20일”을 “10월 16일”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46조제3항중 “있다”를 “없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제24조”를 “제19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제24조”를 “제19조”로 한다.

| 현행 | 개정안 |
|---|---|
| <p>제57조(징계·자격심사의 청구등) ① 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징계를 청구하는 때에는 위원 3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법 제24조(지방자치법 제78조 준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이를 행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징계청구요지서를 배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 ⑤(생략)</p> | <p>제57조(징계·자격심사의 청구등) ① …… …… …… …… …… …… …… …… ……</p> <p>② ~ ⑤(현행과 같음)</p> <p>부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중 “제24조”를 “제19조”로 한다.</p>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

제10조(회의) ① ~ ③(생략)

④교육위원회의 개회·휴회·폐회·회기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설치) ①교육위원회는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④(생략)

제19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 으로 본다.

○○시(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안(1991. 7. 교육자치실시기획단)

제46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의 회의에서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1991. 9. 3. 교육규칙 제3호)

제14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위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62조 준용)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별첨 3)

(제130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01. 7. 2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명시된 동 법률의 근거 법령 조항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제10조로, 소위원회 설치의 근거 법령 조항인 같은 법률 제18조를 제13조로, 징계·자격심사 청구의 근거 법령 조항인 같은 법률 제24조를 제19조로, 정기회의 집회일을 매년 10월 20일에서 10월 16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당초 예산안 심의기간 사이에 예산안 검토기간을 확보하였고,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부자구를 정비하였으며, 부칙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청원심사규칙의 근거 법령 조항인 제24조를 제19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참석 4명, 찬성 3명, 반대 1명).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작년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던 대로 정기회를 분리해서 전반기에 행정감사를, 후반기에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명시된 동법률의 근거법령 조항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조를 제10조로, 소위원회 설치의 근거법령 조항인 같은법률 제18조를 제13조로, 징계·자격심사 청구의 근거법령 조항인 같은법률 제24조를 제19조로, 정기회의 집회일을 매년 10월 20일에서 10월 16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당초 예산안 심의기간 사이에 예산안 검토기간을 확보하였고,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부자구를 정비하였으며, 부칙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의 근거법령 조항인 제24조를 제19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참석 4명, 찬성 3명, 반대 1명).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작년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던 대로 정기회를 분리해서 전반기에 행정감사를, 후반기에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1. 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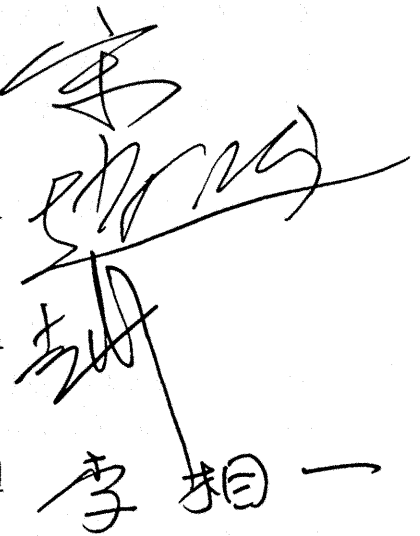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송진하

간사 조일환

위원 이기수

이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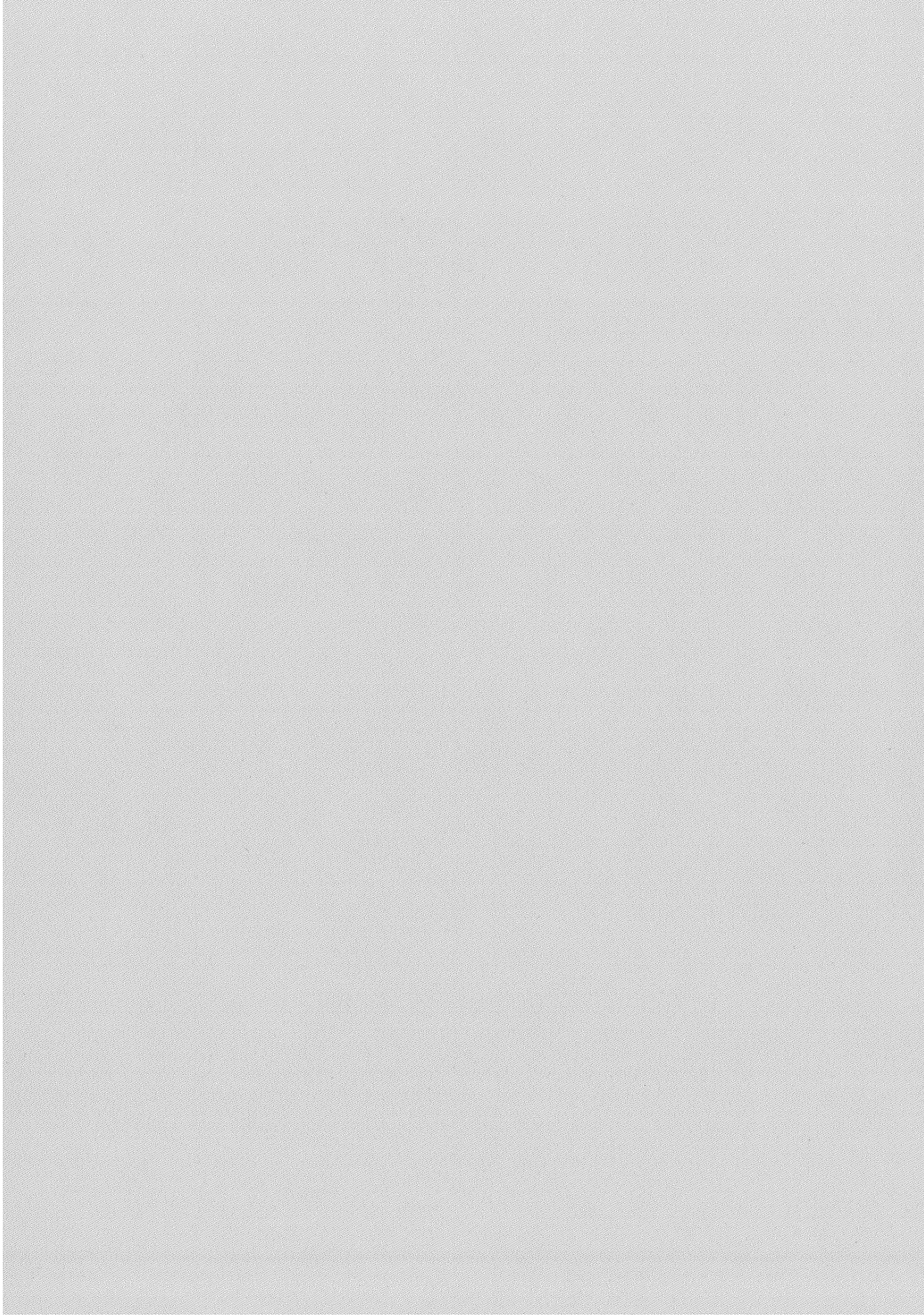


Handwritten signatures in black ink corresponding to the printed names: 송진하, 조일환, 이기수, and 이상일. The signature for 이상일 includes a horizontal line extending to the right.

第13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 제13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21

II .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239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7월 18일 (수요일) 11시 17분

議事日程 (제130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 17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제130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서신 자리에서 그냥 하시죠, 송 부의장님 수고좀 하시고, 간사는 제가 할게요, 제가 간사는 잘하거든요.

(웃음소리)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선출의건

(11시 20분)

● 위원장 송진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에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조일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송진하

조일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일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 조일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1분)

● 위원장 송진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위원장 송진하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감사 조일환

저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규칙의 개정의 건이고, 그래서 우리 집행청에서 물론, 관계관계서 나와 계신데 저희 위원회에서 여기서 심도있게 토론해서 의결한 다음에 우리 집행청에는 서면으로 통보해 주는 걸로 해서 그냥 집행청 간부들을 저는 이번 조례심사에, 규칙심사에 참여 안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 위원장 송진하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간사 조일환

이 위원님 어떠세요?

● 이기수 위원

예, 좋습니다.

● 간사 조일환

예, 그렇게 하시도록 좀 부탁을 올립니다.

(집행청 관계관 회의장 나감)

● 위원장 송진하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좌석순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은 발의자이신 이기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안과 관계된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국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일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 위원장 송진하

예, 말씀하세요.

● 간사 조일환

죄송합니다.

뭐 위원발의라는 게 뭐 예년 봐도 대표로 우리 이기수 위원님이 나와서 발표했을 따름이지 뭐 다 동등하게 하는 건데, 물론, 김광수 위원님이나 제가 먼저번 간담회 안 나온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위원발의로 된 것이 이런 소위원회 와서 왈가왈부 하고 토론한다는 것이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예년에 위원발의를 했을 때는 전원 위원발의지, 한번도 소수의 위원발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보면은 요즘 누가 보면은 마치 누구 몰래 뭐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유선도 있고 또 사람을 보내왔는데 이걸 그냥 공고하기 이전에 적어도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한다면은 전원일치 발의가 이게 바람직하지, 저도 몇몇 위원님들 유선으로 해 보면 "아, 몰랐다, 통보받은 일이 없다" 이럴 때에 여기 와서 집행청에 있는 사람들 있는 데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한다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으냐, 이 말이에요.

더구나 의장이 거기에 서명을 하고 부의장님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끌고 가실 겁니까, 앞으로.

좀더 단합되고 화합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그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 의장이 본회의에서 사과를 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단결하고 화합해야 되는 이런건데 무슨 4 대 2로, 4 대 3으로, 5 대 2로, 누가 보면 마치 분열된 것 같고, 대단히 불행하지 않느냐, 불행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가 위원발의 이렇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말여,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이 작년도에 규칙이 아니고 조례로 도의회에 저희들이 전체의 전원 발의로 해서 이것이 심의를 해서 간 것이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 그럼 그때 다시 올리자, 저도 몇 교사 도의원한테, 아 그건 몰랐다 말여, 노골적으로 본청의 설명만 듣고 그랬다 말여, 이래서 다시 올리십시오, 올리시면은 그게 큰 문제입니까?, 해서 그때 다시 올리려다가 그 전회기에 했는데 바로 올리면 뭐 하니까 시간을 두고, 급한 게 아니니까, 그때 우리의 의견 합치는 그겁니다. 그때 전국의 교육위원회회의규칙 이것도 다 수합을 하고, 그때 뭐니까, 지난번에도 정기회의를 했을 때에 정기회 20일 동안에 예산, 그 다음에 감사, 이게 막 쫓겨가지고 이게 복잡하지 않느냐, 이것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 그때도 위원님들 다수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전후기로 해서 타 시·도처럼 전기에 감사 하고 그 여유를 가지고 또 후기에 가서 예산심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여유로우냐, 제가

이 개정안을 보면은, 뭐 주요골자에 다른 것 없이 20일을 16일로 한다는 것 이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정말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활동을 충실을 기하고 이렇게 하려면, 과거에, 과거에 우리가 합의를 해서 개정을 했던 바 있는 적어도 상반기 중에, 도의회도 저희들이 40일씩 나눠서 이렇게 해 놔지 않냐, 이 말이예요 저희들도, 그래 그것을 막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막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끼리 합의만 하면 바꿀 수 있는 수정의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16일 개최, 이것보다는 먼저 저희가 수정안 낸 것을, 도의회 냈던 것을 가져 왔습니다만은 적어도 정기 회의를 10일씩, 10일씩 나누어서 전기, 후기 나누는 걸로 저는 수정해서 이번에, 규칙이니까 이제 도의회 안가도 된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 이걸 언제해도 된다, 규칙이니까 규칙이래도 된다, 우리 그렇게 하자,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회의 집행청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랄까 이런 기능이 미흡하다고, 아시다시피 요전에 전교조가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전체 목소리로 교육위원회 물렁하다는 소리도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심도있는 감사나 심도있는 예산심의, 또 원활한 우리 회의운영을

위해서는 먼저번에 도의회에 제출했던 그 조례를 이번에 규칙으로 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우선 그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이 정족수가 됐더라도, 우리가 누굽니까, 만나면 괜히 이기수 위원님 발의하고 꺾으렵잖아, 아이구, 내가 조 위원한테 이거 한마디 전화도 못했다 말여, 꺾으렵지 않느냐 이 말여, 저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만년 야당이라서 그런가 나는 왜 이걸 나한테 이걸 의견을 안물으셨을까 말여, 물론 제가 빠진 것은 잘못입니다만은 사적으로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전 부의장님도 얼마나 절보기에 좀 떳떳치도 못하고 말여,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몇 명입니까, 도의회나 국회처럼 수백 명, 수십명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게 일곱 명에서 그래 위원발의를 하는 게 몇 위원 빠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젠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발의는 되도록이면은 물어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정족수가 됐다, 그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 위원님 제가 여쭙볼 때 어째 다른 위원님한테는 이거 하고 나한테는 왜 안했습니까, 사적으로 감정 있습니까?, 아, 그럴거 아니냐 이 말여. 이 위원님이야 대타지,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발의위원 하죠,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지각있게, 좀더 넓은 안목으로 이 회의 운영을 하셔야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이 서명을 한 이 의안이 말여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제가 두가지를 우선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진하

지금 조 위원님의 말씀은 발의시에 우리 몇 명 안되니까 전 위원에게 알려져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적절한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회의 관계는 작년에 우리가 도에 올린 것이 부결이 됐는데, 아마 전 의장으로서 작년에 올린 그런 그 안 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우리가 의결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그것을 관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 간사 조일환

말씀해 보세요.

제가 괜히 시끄럽게...

● 위원장 송진하

좌담식으로 말씀을 해 보시죠.

● 이상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조일환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그 발의대표는 예상하신 대

로 이기수 위원님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고, 그날 참석하셨던 다섯 분 위원, 그날 김광수 위원님 참석 못하셨죠?

● 의사과장 이상기
하셨습니다.

● 이상일 위원
참석하셨지?

● 의사과장 이상기
예, 예.

● 이상일 위원
참석하셨던 여섯 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단, 조일환 위원님께 의사국에서나 의장님이 연락을 못해 줬던 그런 섭섭함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간담회에서 여섯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쪽으로 했고, 또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도의회 가가지고 조례가 부결됐을 때 대단히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도의회에다가 해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 도의회에서도 정례회를 분리했던 것을 합치는 쪽의 자치단체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회의규칙으로도 바꿀 수 있는 일을 자존심 상하게 두 번씩 도의회에다가 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그날 위원님들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칙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정기회 회기를 20일이 아닌 16일로 하자 하는 의견을 그날 다 합의를

본 거고, 어차피 이미 우리가 이렇게 소위원회도 구성했고 의사일정도 확정되었는데, 다음에는 빠진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더라도 이번은 먼저 협의회에서 토론되고 결정된 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간사 조일환

글쎄 이 위원님 우리가 서로 위원 간에 괜히 의견이 충돌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떻게 간담회에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제가 유선으로나 만나서 제가 확인한 위원님은, 세 위원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요.

● 이상일 위원

아 잠깐,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누가 그랬나.

● 간사 조일환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어느 자치단체에서 전후반기 나눈 것을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통합한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저기 의사국에서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분명히 조 위원님께 여쭙보겠는데 그날 물랐다고 그러는 위원님이 계시면 알려주시고, 그날 회의록에서 내용 기재하라고 그랬죠?

● 의사과장 이상기

예, 예.

● 이상일 위원

기재한 내용도 발표하세요.

● 의사과장 이상기

그 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을...

● 위원장 송진하

과장님 설명하세요.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희들이 4월 25일날 간담회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담회 개최한다는 공문도 이제...

● 이기수 위원

6월 25일이죠.

● 의사과장 이상기

아니요, 4월 25일입니다.

● 간사 조일환

4월?

● 의사과장 이상기

예, 4월 25일날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 때 이제 간담회 건수가 127회 임시회 집회 건, 128회 임시회 집회 예정 건, 129회 임시회 집회 건, 그 다음에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관 및 격려 사항,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학사시찰 관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 따른 결의안 채택,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회의규칙개정추진, 이것이 그때 논의가 심도있게 됐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지역교육청 업무보고의 건, 그 다음에 아홉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장과의 간담회, 그 다음에 열번째 시·군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 관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 건을 협의를 해서 바로 그때 그 이른날 회의결과를

요약을 해서 4월 26일자로 저희들이 공문을 결과를 각 위원님들께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간담회 바로 종료 후에 의사국 직원으로 하여금 간담회에서 협의한 규칙안 등의 협의 결과를 우선 전화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황경상씨가, 우리가 그때 여섯 분이 참석하시고 조일환 전 의장님께서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 간사 조일환

4월달에?

● 의사과장 이상기

예, 예.

그래서 황경상씨가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다음날 4월 26일자로 전체 공문서로 해서 위원님들께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조일환 위원님께서 는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사국 직원을 출장 조치를 해 가지고 그 공문서와 같이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간사 조일환

아, 그러니까 개정안, 이것이 4월달에 토의가 됐다?

● 의사과장 이상기

예, 예.

● 간사 조일환

그 서류좀 쭉봐, 4월달에 협의...

(의사과장 의사국 직원에게 "갖다 좀 드려" 하고 말함)

(의사국 직원, 조일환 위원에게 관련서류 열람시킴)

● 간사 조일환

그러니까 지금 개정내용 대로 여기서 월가월부가 됐다?

● 의사과장 이상기

그때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 사항에 이제 1안, 2안,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 간사 조일환

글쎄 그러니까 1안을 할 거냐, 2안을 할 거냐를 그때 결정을 했다?

● 의사과장 이상기

예, 예.

● 간사 조일환

그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 의사과장 이상기

예,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규칙개정은 추후에 우리가 시기를 봐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우리가 1안, 2안으로 해 가지고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로 했을 때 장단점을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때 1안으로 채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7월달에 안건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규칙으로만, 본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간사 조일환

글쎄 4월달이면은 뭐 제가 그때는 참석도 안하고, 여하튼 제가 한 적인 분 위원님하고 유선 내지는...

(조일환 위원님에게 담당자들이 사항을 설명함)

글쎄 좌우간 참석을 안한 건 제가 불찰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지방자치나 교육위원회가 분할을 해서 다시 회귀하는 경향이라면 그것은 물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왜 회귀를 했느냐, 이것을 해 가지고 보완할 필요도 있고, 또 설령 이렇게 공문에 보냈더라도 공문에, 이러한 내용을 뭐 공문으로 보내면 제가 잘 안 살펴서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보냈더라도 적어도 의안으로 올린다면은 아, 이게 먼저 번에 빠지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이 의안에 대해서 공고하기 전이라도 이기수 위원님이 됐든 누가 됐든 사무국이 됐든 간에 이것에 대한 것을 올리기 전에 그래도 한번쯤은 설명을 한번 재확인해 볼 필요도 있지, 공문하나 보냈으니까 우리는 책임을 다 했다, 그리고 16일로 당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개정요지가 뭐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3일간이나 날수가 없다고 해서 이게 무슨 허송세월 하려고 여기 모였드랍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한번 먼저번에 우리가 도의회에서 한 거니까 관철해서 해 보고 잘못됐으면 오히려 내년 가서 개정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지금 조일환 전 의장의 얘기를 듣고, 나도 무세칙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건 날짜별로 결정된 것은 내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발언하신 대로 교육 위원 위원발의를 전 위원이 합의를 해서 하는 게 모양새도 좋고,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알가알부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게 그때 당시는 어떤 이유였든 간에 조일환 위원님이 참여를 못하고서 했지만은 전체가 구체적으로 논의돼 갖고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이 자리에 와 갖고서 번복을 한다든지 하면 이것도 문제가 클테고, 또 한가지는 이게 우리가 회의규칙을 그냥 개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의규칙개정은 우리 손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선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니까, 도의회까지 해 갖고서 감사 열을 떼어 갖고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추진 못 하라는 법이 없는 애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우리가 결정해 놓고서 수습만 밟는 일인데 이걸 이 자리에서 다시 결국은 그때 한자리에 없었다고 해 갖고서 다시 번복을 한다고 하든지 하면 전에 결정한 여섯 분은 뭐가 입장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번은 우리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끝나는 동의되는 얘이기 때문에 우선 개정하고서, 그런 또 뭐여, 그런 안이 있으시다든지 하면 또 재차 도의회까지 통과되는 그런 개정안을 다시 구상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때 결정해 놓고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다든지 또는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못한 것만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송진하

안건 발의 시에는 불참하신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려서 같이 동의를 받도록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기회의 조례개정이 도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사실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차례 거기에 대한 아마 방법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당초에 우리가 상정했던 조례가 관철되도록, 그런 쪽으로 관철되도록 아마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고 했는데 아마 조례로서는 다시 상정할 수가 없고 규칙으로 해서 지금 결정을 보려고 하다보니까 다소 당초 안과의 거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계기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뭔가 원활한 우리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조 위원님, 의장 당시에 했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발의하신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걸 자꾸 논의를 해 봐도 그렇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 간사 조일환

글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충원 위원님도 풍교롭게 바쁘시고 또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건강상 문제가 있고, 우리 송진하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우리 송진하 위원님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발의를 했더라도 한번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수정의결 하는 것이 만약에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장께서 이상일 위원님 안이나 이기수 위원한테 찬동을 한다면야 그 나머지 연기할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의의가.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송진하

아니 이 의견에 찬동한다는 것 보다도...

● 간사 조일환

우리 송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괜히 번거롭게 이거 하나 가지고 모이고 모이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송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만약에 이것이 심도있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면, 아, 이충원 위원님 오시거든 그럼 오후나 내일이라도 우리가 다시 2차 소위원회를 열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하실 것이고, 송 위원님께서 지금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난 동의합니다,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봐야 김광수 위원 안오시고 다섯 분밖에 못 모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조일환 전

의장께서 모두에 말씀했듯이 위원발의의 문제는 일단은 이렇게 조례심사소위원회라든가 이런 석상에서 기록을 해 가면서 이렇게 서로, 물론, 의회문화에 난상토론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은 우리 교육위원회는 또 지금까지 관례상 대부분 위원발의라든지 하면 사전에 우리가 조율해 갖고, 얘기돼 갖고서 간단하게 조례심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을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이것을 발의할 때 당시는 간담회에서 그때는 여섯 명이 사실 만장일치로 얘기하다시피 해 갖고서 통과된 것 같아요, 4월달에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의됐을 때는 심도있게 우리가 참 검토를 덜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다시 그때에 참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됐던 사항을 여기 와 갖고서 불참했던 위원이, 나는 통과 안됐기 때문에 뭐 수정한다든지 말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럼 그때 합의해 줬던 현재 불참했던 두 위원들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뭐냐면 감사를 열흘씩 떼어서 하는 문제는 이게 벌써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대로 규칙을 개정해 놓고서 필요하다든지 하면 먼저 그게 도의회에서 사실 부결됐던 사항이지만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위원발의 해서 안이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장단점을 검토해서 필요가 있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

분이니까 이번만큼은 양해를 해 주시면...

● 감사 조일환

제가 의안을 설명하신 우리 이 위원님께 제가 질의 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데는 전반기에는 결산을 해요, 결산. 사실 우리가 결산을 그 참 1조원이나 쓴 돈을 뭐 며칠동안에 결산한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뭐 현장을 하나 가봅니까, 뭐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내군데는 제가 알기로 감사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세군데는 결산 겸 사무감사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형식상은 대표니까 그 우리가 도의회에 조례 개정을 제출했을 때 또 그 부결된 다음에 우리의 대책, 다시 제출하자, 그 다음에 뭐 있느냐, 아, 회의규칙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도의회 눈치볼 것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합의가 됐었죠, 그렇지, 안됐었습니까?

● 이기수 위원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는 안했어요. 아니 회의규칙으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애긴데 그거 제 지금 기억은 말입니다, 지금도 확실치는 않죠, 뭐 이제 두달 전에 한 얘기도 기억이 안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회의규칙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수시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뭐 도의회까지 다시 번쩍스럽게끔 이렇게 하느니,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애

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감사 조일환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이니까 뭐 우리가 하는 거니까, 뭐 어제하고 잘못하면 또 바꾸고, 우리가 그런 위원회를, 소모성 위원회를 운영해서는 안되죠. 적어도 조례든 규칙이든 우리가 심의하고 이것을 개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시간이나 또 노력이 들더라도 여러 가지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위원으로서의 할 일이고, 저는 그때의 위원님들이 일단은 우리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도의회에 보낸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교육위원회자치법이라든가 뭔가 변한 게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상황이.

또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 몇 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째서 부결됐느냐, 어째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상황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럼 날짜 4일을 땡겨가지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의하신 위원님으로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합의를 했지만 이렇게 수정안을 또 의안을 내게 되는 동기는 이거다, 이유는, 이렇게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겠다, 뭐 형식상이라도 위원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이기수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먼저 감사를 뭘니까 전반기에 한 열흘을 앞당겨서 해 갖고 정기회를 나누자는 안이 언제...

● 의사과장 이상기

기간은 열흘 넘어서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글썄 그게 언제쯤 우리가 올라갔다 부결됐죠?

● 의사과장 이상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송진하

예

● 간사 조일환

가만있어 봐요, 얘기 듣고.

(의사과장 이기수 위원에게 설명함)

● 이기수 위원

그때 이제 우리가 발의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 부결됐는데 그때는 지금 조일환 위원님 그때 의장이셨고 저는 부의장이었었고 해 갖고서 그 부결한 것에 대한 우리 교육위원들에 대한 모멸감이라든가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위원이 아니고 저로서도 부의장이라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죄송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중에 이제 우리 임기는 끝나고 새 의장단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9월달에, 9월달에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얘기는 어떤 이유에서 부결됐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자존심과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고 해 갖고서 이

걸 이렇게 어렵게끔 해 갖고서 도의회까지 굳이 하느니 보다는 우리가 감사와 예산 그게 너무 붙어있어 갖고서 감사하고 나서 바로 예산심의 하는 이런 데 너무나 타이트한 스케줄로 인해 갖고 하다보면 우리가 소홀해 질 수도 있고, 또는 너무나 부담이 되고 이렇게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 본 의안에서 도의회 하고 어떤 조율을 해 갖고서 올라가 갖고서 통과된다는 보장도 아직 확실치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권한 안에서 우리가 땡겨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이제 감사를 앞으로 당겨서 한다든지 이렇게 전반기를 했을 때 문제는 우리가 결국은 감사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집행된 사항을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그 감사의 목적이 예산과 연계돼 갖고서 감사결과에서 예산의 자료를 우리가 수집하는 의미에서도 그게 너무 거리를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우리가 감사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예산은 10월달에 가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정보수집하는 목적에, 예산심의 하기 위한 정보수집 한 그런 데서 좀 퇴색될 수 있는 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또 한가지 우리가 감사한다면 집행사항을 주로 보는 애긴데 한 6월달 이렇게 감사한다든지 하면 3월서부터라든지 하면 얼마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사기간도 10월달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발의하고 먼저도 그렇게 논의가 됐던 걸로

난 생각이 됩니다.

● **간사 조일환**

가만 있어요, 조금 제가 미안합니다.

괜히 위원님을 어렵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4일을 당겨서 정말 참 효과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정기회를, 찬성합니다.

그 전반기 후반기 나누는 이유가 보편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야, 이게 날짜에 벽차, 오전 오후 이거 못할 것이다, 그때도 다 위원님들이 다 이심전심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이게 이것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저라고 특별한 저기 있겠어요? 적어도 감사를 이렇게 하면은, 6월 중에 하면은 대개 예산 이것이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도 이게 반영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이것이 나누는 것이 교육청의 운영이나 교육위원회 위원활동이나 이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위원님께 정말 이게 4일간을 당겨서, 그래 뭐가 이게 우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나는 나누는 것만 못하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번에 합의를 해서 일단 도의회에 올렸던 것이고, 우리가 3대가 4대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그 당시의 마음과 지금과 그 생각이 바뀌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고는 도의회가 뭐 어떻게 됐든가, 뭐 예산의 제도가 바뀌었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기 때문에, 아,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 4일만 당겨도 괜찮겠어, 그런 게 있다면 저도 동감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쪽이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이게 이렇게 옮기는 것 보다는 이 나누는 것 보다는, 4일간으로 그 효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뭐 너무나 이 사항들을 상세히 아서 갖고서 모두에 뭐 제가 발의했는데 어떤 입장에서 했다는 얘기를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이거 해 갖고서 뭐 꼭 이제 그때 합의했던 사항이지 내가 읽어라 해 갖고서...

가만 있어봐, 이거 전부 기록은, 잠깐 기록을 Up Down Record 하면 어떻겠습니까?

● **간사 조일환**

뭐 우리 의결로다가 하면은 속기록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결로 정하면 되요.

(의사담당 “정회를 하시죠.”하고 말함)

● **이상일 위원**

아니 정회를 하지 말고 기록만 하지 말고 충분히 회의를 해서...

● **간사 조일환**

어떻게 빼는 게 좋겠어요, 위원장님?

● 위원장 송진하

예, 좋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 위원장 송진하

그러면 이 규칙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먼저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거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원안대로...

● 간사 조일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규칙으로는 안되는 거예요, 개정이 안되는 거예요?

● 의사과장 이상기

예

● 간사 조일환

확실하죠?

● 의사과장 이상기

예

● 간사 조일환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송진하

확실한 답변을 해야죠.

● 의사과장 이상기

예

● 간사 조일환

확실하고, 이것은 속기를 해 놔, 확실하고...

● 의사과장 이상기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바꾸는 것은 조례를 바꾸고 가야 됩니다.

● 간사 조일환

그러면 저 위원장님, 이것을 도의회에 우리가 먼저와 같이 안을 다시 한번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실례될까?

● 위원장 송진하

글쎄요,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하는 건데...

● 간사 조일환

자존심이니까 오히려 관찰해야지.

● 위원장 송진하

다시 부결하고서 다시 또 이번에 가결해 주겠느냐, 그 사람들이.

● 간사 조일환

그것은 뭐 가서 설명하더라도.

● 이기수 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이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먼저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 되면 말입니다.

● 간사 조일환

...(청불)...

● 이기수 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의장단이 도의회 교사위원들하고 도의원들 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는 후에 올린다는지 하는 타이밍을 정해야 될 거예요. 그냥 또 올려갖고서 한다면 두 번씩 망신 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어요?

● 이상일 위원

우리가 두 번씩 망신 당할 필요 없이 않

느냐, 그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 위원장 송진하

그 문제는 우리 위원 전체 논의를 해보고, 오늘은 원안대로...

● 간사 조일환

글쎄 원안대로 하시는데 저는 뭐 위원님들 개인이니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로다가 다시 해서 16일로 당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괜히...

● 의사과장 이상기

저, 위원님...

● 간사 조일환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 정도는 내가 아니까 설명하지 마세요.

그 무슨 날짜 때우기 위해서 3일간이나 이렇게 회의를 하고 앉아 있느냐 이 말이지, 나는.

그래서 기왕에 이게 이번에 대두됐으니까, 그까짓 거 우리가 서해수련원 안가면 어때요, 서해수련원 작년에도 갔다오고, 지금 뭐 변한 게 뭐 있습니까? 서울연수원도 가보고 왔어요, 그때 다 됐습니다, 활용만 안되고 다 된 거 보고 왔어요. 그런데 차라리 이것을 내일이라도 더 우리가 알아보고 이걸 심도있게 이충원 위원님도 오시면 해서 난 좀 이걸 신중을 기했으면, 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진하

그러면 그 조례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

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우리 뜻을 관철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원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어떻겠어요?

● 이상일 위원

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간사 조일환

그러면 이게 안되는 거죠, 우리가 정족수가 몇인데, 여섯 명인가?

세분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이기수 위원

제창합니다.

● 위원장 송진하

본 규칙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간사 조일환

가부를 물으세요, 물으셔 가지고...

● 위원장 송진하

말씀하시죠.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진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간사 조일환

거기 수정안을 정식으로 받아들여서 이 수정안과 원안, 이것을 두 안을 놓고 표결

[제130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렸으니까...

● 의사담당 김왕년

그게 성립이 되려면은 찬성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 간사 조일환

그러세요, 그 하세요.

제가 속기를 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수정안은 우리가 작년에 도의회 제출했던 대로 정기회의가 예산과 감사, 이것이 중복돼서 상당히 그 본래의 정기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6월 이전으로 전반기 해서 감사, 또 후반기 해서 예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송진하

조일환 위원님 수정 동의 하시겠습니까?

● 간사 조일환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셔야죠.

● 이상일 위원

아니 여기 수정동의를 하셨어요, 이미, 했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조일환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겠습니까?

(침묵)

찬성이 없으므로, 조일환 위원님 수정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이상일 위원

원안에 대한 표결만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송진하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바랍니다.

(거수 3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 바랍니다.

(거수 1명)

표결결과 찬성 3,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0 출석위원 : 4명

위원장 송진하, 간사 조일환,

위원 이상일,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명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별첨 1)

제13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8. .

위원장

송진하



(별첨 1)

제130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

| 일 시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2001. 7. 18.(수) ● 11:20~ | ○ <u>제1차조례심사소위원회</u> 1. 위원장선출의견 2. 간사선출의견 3. 의사일정결정의견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

